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「6·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전사자의 유해 등의 조사·발굴을 위해 국유림 대부 등을 신청할 때 실측도 대신 해당 사업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제출서류를 간소화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국방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4. ~ 5.)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

농림축산식품부령 제 호

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1항제2호나목 중 “제7호”를 “제7호 및 제8호차목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3조(국유림의 대부등의 절차) ①법 제21조에 따라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1. (생략) 2. 사업계획도(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제2항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「국가공간정보 기본법」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실측도에 사업 및 시설물 설치 내용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) 1부. 다만, 실측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다. 가. (생략) 나. 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3의3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: 해당 사업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	제23조(국유림의 대부등의 절차) ①-----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. 가. (현행과 같음) 나. ----- ----- 제7호 및 제8호 차목----- -----

3. ~ 5. (생략)	3. ~ 5. (현행과 같음)
② ~ ⑥ (생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